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 》

■ 서천호·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82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서천호·문금주의원 대표발의(제221478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3
가. 총괄 검토	4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	4
(2) 제정의 필요성	8
나. 주요 내용 검토	11
(1) 제명, 목적(안 제1조) 및 정의(안 제2조)	11
(2)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 및 그 효과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5
(3) 실시계획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안 제18조)	19
(4) 기반시설 설치의 우선 지원(안 제19조제2항)	26
(5) 국·공유재산의 사용·처분 등에 관한 특례 (안 제25조, 제33조 및 제47조)	28
(6)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추진단의 설치(안 제26조·제27조 및 제29조)	35

(7)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안 제30조 및 제31조)	39
(8)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안 제38조 및 제46조)	43
(9)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특례(안 제39조)	46
(10)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학문·연구 기반조성 (안 제40조 및 제42조)	48

I. 서천호·문금주의원 대표발의(제221478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천호·문금주의원 등 42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

다. 회 부 일 : 2025. 12. 3.

2. 제안이유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전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핵심 산업으로 우주항공 경쟁력이 곧 국제경쟁력을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되고 있음. 세계 각국은 우주항공 전담 행정기관과 산·학·연을 집적화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경쟁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의 설립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우주항공 거점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의 전반을 통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이에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 및 인력, 자본의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협력(産學研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 및 창업혁신도시 등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기본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25조까지).

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관할 시·도지사, 민간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6조·제27조).

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0조).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9조).

자. 우주항공캠퍼스 조성·운영, 자율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특례,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자금지원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4. 검토의견

가.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

제정안은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 소재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우주항공 분야 관련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관광 등의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총 8장 5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사업의 진행 순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 분야 관련 제반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서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인 “예정지역”과 예정지역과 맞닿은 “주변지역”으로 구성되며(안 제2조), 국가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우주항공 분야의 자족(自足)도시, 우수연구 인력 및 관련 기업의 유치·정주 여건을 구비한 도시, 교육도시, 문화관광도시, 창업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함(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청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후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안 제26조, 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함)을 지정함(안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14조) 및 개발계획(안 제15조)을 수립하여 고시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안 제16조)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안 제18조).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준공검사를 하여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를 공고함(안 제23조).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하며(안 제30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부담금의 감면(안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안 제39조) 등의 특례가 부여됨.

또한, 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캠퍼스의 조성·운영(안 제40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안 제41조), 외국교육기관인 대학 및 유치원의 설립 허용(안 제42조),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에 대한 부지매입 및 운영비 등의 지원(안 제4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안 제44조)과 투자진흥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안 제46조)등의 특례도 규정하고 있음.

제정 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안 부칙 제1조).

[표 1] 제정안의 기본 구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7조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제9조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제10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제11조	행위 등의 제한
제12조	예정지역등의 해제
제3장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	개발계획의 수립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	토지의 출입 등
제18조	인·허가등의 의제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21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2조	선수금
제23조	준공검사
제24조	공공시설등의 귀속
제2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4장 추진기구	
제26조	위원회의 설치
제27조	위원회의 조직
제28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29조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의 설치 등
제5장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제30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운용
제31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32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33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34조	차입금
제35조	예비비
제36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37조	잉여금의 처리
제6장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제38조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39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40조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4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제43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 운영에 대한 지원
제44조	투자진흥지구 지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45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46조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제47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7장 보칙	
제48조	손실보상
제49조	보고 및 검사 등
제50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5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제53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54조	벌칙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2) 제정의 필요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글로벌 우주항공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①부처별 우주·항공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인 우주항공청¹⁾으로 통합하여 우주항공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②산·

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보(補)한다.

④ 우주항공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둔다.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학·연 전문가 및 외국인 우주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채용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정부 모델 마련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이라 함)이 2024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4년 5월 27일 시행됨.

[표 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기능·조직	(지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제6조) (소관 사무) 우주항공 관련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우주위험 대비, 우주안보(외교·국방 제외)(제7조) (조직) 청장-차장-본부장 체계, 본부는 연구개발 총괄(제6조) (조직 특례) 청장이 청 훈령으로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과(課)단위)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 가능(제8조제1항), 민간 전문가를 20%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 가능(제8조제2항)
인사	소속 임기제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제9조)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책정에 관한 특례(제10조) ※ 직급 상관없이 기준액 150% 초과 책정 가능, 인사혁신처장 사후 통보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필요시 파견·겸직 허용(제11조) 소속 임기제 1급 공무원의 주식백지신탁 예외 인정(제14조)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 후 유관분야 취업 등 완화(제15조)
예산	우주항공청에 예산 전용 권한 부여(제16조) 안정적인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위하여 우주항공기금 설치(제17조) ※ 우주항공기금 관련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이관(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2024. 1. 11.) 및 특별법 해당 조문을 토대로 재정리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개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우주항공청

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과 연관된 여러 분야의 역량이 집중된 거점인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여 내실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이후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주요 내용 검토

(1) 제명, 목적(안 제1조) 및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협력(産學研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란 우주항공분야와 관련한 산업·연구·국제교류·교육·행정·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란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제정안은 제명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음(안 제1조).

② 정의(안 제2조)

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지역” 및 “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

안 제2조제2항의 예정지역의 경우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으로 규정하는바,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22.1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 클러스터²⁾로 지정된 경상남도(위성 특화지구), 전라남도(발사체 특화지구), 대전광역시(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임.

추가적으로, 제정안의 대부분의 조항에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예정지역등”으로 묶어서 통칭하고 있고 ‘주변지역’에 관한 별도의 규율은 지정 해제에 관한 안 제12조³⁾ 한 개 조문뿐이라는 점에서 ‘주변지역’

2)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우주산업클러스터**”란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그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인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3)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2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등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예정지역**: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2. **주변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고시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에 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적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하게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별도로 정의하
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에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적용
을 상당 부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제
53조⁴⁾ 등 주변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들이 있음.

[표 3]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구분 여부

구 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의 지정	공통 (안 제10조제3항)	예정지역 (제13조제4항)
행위제한	공통 (안 제11조)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구분 (제14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해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구분 (안 제12조)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구분 (제15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고시 의제	공통 (안 제15조제8항)	예정지역 (제20조제8항)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① 건설청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
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방법 등 주변지
역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권한 부여	공통 (안 제20조제1항)	예정지역 (제24조제1항)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지역	공통 (안 제25조제1항)	예정지역 (제57조제1항)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지역	공통 (안 제33조)	예정지역 (제46조의3)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가능 지역	공통 (안 제42조)	예정지역 (제63조의6)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가능지역	공통 (안 제43조)	예정지역 (제63조의8)

(2) 예정지역등의 지정·고시 및 그 효과(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 정 안
제8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할 때 자연지형·환경성·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정지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목적 및 시행자 2. 예정지역등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細目)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① 예정지역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보며, 예정지역등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 정 안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결정·고시·공고·승인된 구역·지역·지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예정지역등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그 허가구역 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예정지역등의 지정(안 제8조)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청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함)을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한 입법례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청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⁵⁾가 있음.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②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안 제10조)

제정안은 예정지역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⁶⁾ 및 도시개발구역⁷⁾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지형도면이 고시⁸⁾된 것으로 의제하고(제1항), 예정지역등의 안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하려는 것임(제3항).

②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할 때 자연지형·환경성·경제성 및 행정구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예정지역등 지정안의 개요

⑥ 예정지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7)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정안의 내용 중 지형도면의 고시 의제와 관련하여,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안 제10조제1항의 의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안 제9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9)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참고¹⁰⁾할 필요가 있음.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에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3) 실시계획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안 제18조)

제 정 안
제18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제 정 안

10.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2.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14.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1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9.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제 정 안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운영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23.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제 정 안

3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및 고시,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3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변경 허가·신고
38.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3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4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42.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3. 「소방시설공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4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45.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46.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제 정 안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건설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허가 의제의 대상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안 제18조제1항제9호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¹¹⁾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에 대하여 군사시설 보호 및 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을,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 제18조제1항제24호 중 “「수도법」 제7조¹²⁾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은 개발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므로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이를 의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삭제 의견을,

안 제18조제1항제29호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¹³⁾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의제 시 개발지역의 열 수요와 같은 에너지 효율성 등 공급 타당성 유무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인·허가 의제의 효과로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시 수수료·사용료 등의 면제(안 제18조제3항)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은 유상 사용이 원칙이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사용료”의 면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¹⁴⁾.

12)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4)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시 수수료·사용료 등의 면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입법례가 존재함.

한편, 현행법 문언에 맞게 안 제18조제1항제23호의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를 “소하천등 정비의 허가”¹⁵⁾로 하는 등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인·허가등의 의제)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15) 2016년 1월 27일에 법률 제13919호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제10조제1항에서 소하천공사의 (시행) 허가를 규정하고 있었음.

「소하천정비법」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등 정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기반시설 설치의 우선 지원(안 제19조제2항)

제 정 안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정지역등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예정지역등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우주항공분야 산업의 거점으로서 우수 인력 및 기업의 유치·정주 여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통시설과 광장·녹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됨.

다만, 우선 지원 대상 중 교통시설(안 제19조제2항제1호)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의 경우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효율적·체계적 투자를 위하여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¹⁶⁾, 공항개발 종합계획¹⁷⁾

1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제정안 규정이 다른 입법의 선례가 될 경우 무분별한 인프라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¹⁸⁾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공항시설법」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항공 수요의 전망
2. 권역별 공항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
3.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공항 및 비행장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8)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철도·항만·공항 등 교통시설의 우선 설치 지원의무와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등에 유사 입법례가 존재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철도·도시철도 및 공항·항만시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3. 공항·철도 및 항만시설

(5) 국·공유재산의 사용·처분 등에 관한 특례(안 제25조, 제33조 및 제47조)

제 정 안
제2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용도폐지, 매각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매각, 양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제3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시·도교육감은 예정지역등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속된 공공시설을 국토교통부에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정지구 내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하는 기관 및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 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 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입주 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투자진흥지구에서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정지구 내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여·대부할 수 있다.

①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안 제25조)

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 목적이 아닌 국·공유지 처분을

제한하고(제1항),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임(제2항).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7조¹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²⁰⁾ 등이 있음.

제정안 중 예정지역등에 소재한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양도 허용(안 제25조제2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양도”가 매각과 달리 대가 없는 증여를 의미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가 부담의 지방자치단체 전가를 금지한 「지방자치

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7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만 해당한다)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대해서는 건설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137조제2항²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②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안 제33조)

제정안은 안 제24조제1항²²⁾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공공시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유사한 입법례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3²³⁾이 있는데, 동 규정

21)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2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4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양여 등이 금지되지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²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발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공시설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임.²⁵⁾

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①종전 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고 새로 공공시설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국토교통부에 양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일방적이며, ②사용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²⁶⁾에 국가의 무상사용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③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에 관한 특례(안 제47조)

제정안은 우주항공캠퍼스 입주기관 및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합진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03249호) 검토보고서 39-41면 참조.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또는 매각을 허용하면서(제1항), 임대 시에는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되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입주기업이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며(제3항), 입주기업이 국·공유재산 등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금의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제4항),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제5항), 예정지구 내 입주기관에 대한 재산등의 무상 사용·수익 또는 양여·대부(제6항)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²⁷⁾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제정법에 사용료의 감면(안 제47조제5항)과 장기 사용허가(안 제47조제2항)의 근거를 두더라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는 한 제정의 실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공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①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시

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설을 유치하기 위한 입주기관·기업 등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²⁸⁾ 등에 따라 임대료 감면, 장기 임대 등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공유재산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며,

②공유재산 양여는 소유권을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제30조(대부기간), 제35조(대부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장기 20년 대부, 대부료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6)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의 설치(안 제26조·제27조 및 제29조)

제 정 안
제26조(위원회의 설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8. 제30조에 따른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9. 제40조에 따른 우주항공캠퍼스의 입주승인에 관한 사항 10. 제4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45조에 따른 해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시장·군수 중 1명 4.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제 정 안

-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된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의 설치 등) 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추진단에 예정지역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 ④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을 위한 제반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²⁹⁾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토교통

29)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9.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10.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안 제26조 및 제27조),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함)을 설치하도록(안 제29조)하는 내용임.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추진단의 설치 여부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을 통하여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과 함께,

①기존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와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³⁰⁾를 고려할 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도시개발위원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31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기획예산처차관 및 건설청장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설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건설청장이 된다.

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회³¹⁾ 또는 동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활용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과,³²⁾ ②국토교통부의 하부조직은 대통령령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할 사항이며 제정 이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직 보강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에 각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①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업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개발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기업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의2. 통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기업도시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32) 정부는 실제로 제21대국회인 2022년 9월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성격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소관 법률들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117677호)이 2023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법률 제19986호로 공포되었음.

(7)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안 제30조 및 제31조)

제 정 안
제30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운용) 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③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회계를 관리·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예정지역등 안의 국·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34조에 따른 차입금 7. 제2항제8호에 따른 출자 및 용자로 인한 수입금 8. 그 밖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항공복합도시에 입지할 우주항공청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제19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의 지출 3. 제1항제5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제40조에 따른 우주항공캠퍼스 조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43조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의 입주 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지원

제 정 안
에 필요한 비용 8.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용자 9. 그 밖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의 지출 ③ 제2항제8호에 따른 출자 및 용자의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를 신설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이라는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³³⁾에서 요구하는 개별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제정안과 같이 특정 도시의 건설 또는 조성에 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³⁴⁾ 혁신도시건설특별회

33)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3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사용료, 임차보증금 회수금 및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제35)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³⁶⁾가 있음.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4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자 및 용자로 인한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1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의 지출
3. 제47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의 지출
6. 제54조에 따른 관련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7.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용자
8. 제63조의6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9. 제63조의7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0.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 10의2.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
2.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 혁신도시건설 비용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6. 혁신도시의 건설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7.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0.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
11.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
12.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제정안에 따라 특별회계가 설치될 경우 일반회계와 별도로 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투입함으로써, 안정적인 도시 건설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에 필요한 재원 추계 및 중장기계획 등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 바 없어 국비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고유 세입원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광주광역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지원
5. 문화전당의 설립·운영, 문화재단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6.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8.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8)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안 제38조 및 제46조)

제 정 안
제38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천 점용료·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 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입주 기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보조금 2. 고용보조금 3. 고용훈련보조금 4. 제품성능 검사비용에 관한 지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정안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8조³⁷⁾),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투자진흥구

37) 유사한 입법례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2조가 있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

역(안 제44조³⁸⁾)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 및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명시(안 제46조)하려는 것임.

제정안의 입법화 여부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와 함께, 비과세·감면 등 특례를 개별 법률에서 정할 수 없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³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⁴⁰⁾, 부담금의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⁴¹⁾와 관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3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4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 안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39)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4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에 관한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런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국토교통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농림축산식품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개별법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투자진흥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국세의 감면(안 제46조제1항)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의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특례(안 제39조)

제 정 안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⁴²⁾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⁴³⁾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4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기관장”

하려면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⁴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⁴⁵⁾의 입법례와 같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와 아울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근거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는 개별법보다 「국가재정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관련 불특정 사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임.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1.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일 것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것

4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45)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0)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학문·연구 기반조성(안 제40조 및 제42조)

제 정 안
제40조(우주항공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주항공분야 기술·학문의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우주항공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2. 제4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항공분야 국내외 연구기관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우주항공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우주항공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주항공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우주항공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제 정 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우주항공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주항공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8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등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예정지역등”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① 우주항공캠퍼스의 조성 및 운영(안 제40조)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주항공 분야 우수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우주항공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한 후 조성된 캠퍼스 일부를 공익법인에 기부·출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캠퍼스에는 「고등교육법」 및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 46)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임차하여 국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등 설립상의 특례가 인정되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제5항)에 사업시행자가 캠퍼스의 일부를 기부·출연하고(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비용을 출연·보

46)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①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5. 설립주체가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시설·건축물을 별표 2에 따른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조(제7항)할 수 있음.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⁴⁷⁾에 따른 공동캠퍼스가 있음.

- 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건설청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③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 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 ⑦ 건설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⑧ 건설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⑨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8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⑩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안 제40조제4항 중 국내 대학에 관한 부분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설립기준에 관한 내용이며,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에 관한 부분으로 규율대상이 상이하므로,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신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특례(안 제42조)

제정안은 「사립학교법」 제3조⁴⁸⁾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⁴⁹⁾에서와 같이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예정지역등(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권자의 경우 유치원 또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교육감,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으로 상

48) 「사립학교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예정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이하므로 승인권자와 관련된 규정을 관련 법률에 맞게 수정⁵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4

50)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